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12. 20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6. 12. 20
- 라. 상정일자 : 1996. 12. 23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호)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지도공무원)의 정원을 '97. 1. 1자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고 상수도 업무의 읍.면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지도소의 국가직정원 44명을 지방직화하고 기능직 1명을 감원하여 직속기관 정원 112명을 155명으로 하고, 사업소 정원 69명중 1명을 감원하여 68명으로 하며 읍.면.동 정원 347명중 2명을 증원하여 349명으로 조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3항(이법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제2조 및 부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까지 년차적으로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3조에 관련하여,

○ 지도소의 국가직 정원 44명을 지방직화하고 읍.면 상수도 업무의 위임에 따라 지도소 기능직 1명을 감원하고 사업소 정원 69명중 1명을 감원 2명을 읍.면.동 정원에 포함시켜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 개정상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 론

- 생략

6. 소수의견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96. 12.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재 안 이 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지도공무원)의 정원을 '97. 1. 1자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고 상수도업무의 읍면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지도소의 국가직 정원 44명을 지방직화 하고, 기능직 1명을 감원하여 직속기관 정원 112명을 155명으로 하고, 사업소 정원 69명중 1명을 감원하여 68명으로 하며, 읍면동 정원 347명중 2명을 증원하여 349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112명” 을 “155명” 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69명” 을 “68명” 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347명” 을 “349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중 국가직의 지방직화
정원 44명의 책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